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6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6. 15

다. 상 정 일 자 : 2005. 7. 4

(제131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사회복지과장 정이환

나. 제안사유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이 2005. 1. 29. 개정공포시행 됨에 따라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, 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하여 아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등 보육정책과 아동복지(급식포함)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로 변경 됨에 따라 조례 전 조문의 자구 수정

○ 위원회의 구성위원을 15인이내로 변경하고 아동(급식)복지분야 전문가 및 단체대표 등을 포함.

○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부군수로 변경함

○ 보육정책 및 아동복지(급식포함)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기능을 세분화하고 확대함.

○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.

○ 관련근거 : 영유아보육법, 영유아보육법시행령,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 시행령,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안내서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용태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따른 보육정책과 아동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

위한 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 의결"

7. 붙 임 : 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화순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6조와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 등에 의한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1. 보육 및 아동복지분야 전문가
2. 보육시설장 대표 및 아동복지시설장
3. 관내 학교교사 및 보육교사, 복지시설종사자
4. 보육아동학부모, 아동보호자, 지역주민
5.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관, 후견기관 대표
6. 아동급식 업체 또는 단체대표, 영양사회대표 등
7. 보육 및 아동복지 업무담당 군과장, 군교육청 관계공무원

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담당을 간사로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1조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한 년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보육시설의 설치·운영기준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보육시설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필요경비 수납에 관한 사항
4.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
5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2조에 의한 도서·벽지·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6. 보육정보센타 설치·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
7.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의 후견 및 결연, 가정위탁, 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
8.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한 자문과 협의
9. 요보호아동 상담 및 지원사항 협의
10.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,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, 급식단가, 위생관리 등 아

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
11.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12.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
13. 복지프로그램 개발, 평가에 관한 사항
14. 복지시설 거주자와 종사자의 생활 및 근무환경 개선, 고충처리
15. 보육·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
16. 그 밖의 보육 및 아동복지에 필요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,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제8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,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공개의 제한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